C - 79 - 2015

낙하물 방지망, 방호선반 등 낙하방호시설을 최상층 부분에 1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하부층은 낙하방호시설 설치를 생략하고, 수직보호망 등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(가)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은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 작업층이나 철골조 바닥 콘크리트 타설층, 해체공사 작업층 하부로부터 수직거리 9m 이내, 수평 내민길이 3m 이상으로 설치하되, 자재 및 공구 등의 낙하에 대해 충분한 낙하방호 성능을 유지하고 풍하중에 안전토록 사전 설계하여 설치한다.
- (나) 각층의 수직보호망은 돌풍에 의한 낙하·비래 위험이 없도록 수직 개구부에 틈 없이 설치한다.
- (다) 최상층부 또는 상부층에 설치되는 SCN 등 낙하방지 선행공법 가시설의 경우 상부에 부착되는 일체식 낙하물 방지망, 방호선반 등을 낙하 위험범위의 최소 수평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고, 이 경우 부착된 가시설을 포함 하여 전체 가시설에 대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9)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계획 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.
  - (가)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높이에서 건축물 외부 벽체를 시공(신축, 개조, 해체작업 등)하는 경우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, 다만, 낙하 방지 선행공법 가시설을 해당층 작업 전 선행하여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(나) 낙하물 방지망은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 동바리 조립·해체작업층 또는 철골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완료된 층 아래로 9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다) 낙하물방지망의 수평 내민길이는 건물 단부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
- (10) 수직보호망은 공사 중 구조물 높이 4층 또는 12m 이상부터 각 층에 설치한다.